

중 국

[판례 분석]

자연 요소를 사용한 포장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26. 07. 29.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상품 포장 도안이 일출과 해양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요소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었더라도 선과 색채 등의 배열과 조합에 디자인 미감과 독창성 및 예술성이 인정되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포장에 표시된 상표와 일부 문자 표현이 다르더라도 전체 형상과 비율 및 색채와 요소 배치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1. 현황

온라인 상거래와 라이브 커머스가 일상화되면서 상품 포장은 단순한 용기나 운송수단을 넘어 상품의 분위기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는 시각적 매체로 기능하고 있음. 특히 화장품과 향수 제품은 기능이나 성분만으로 차별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색채와 도형 및 문자요소의 배치를 결합한 포장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포장디자인은 외관 디자인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각적 표현에 독창성과 예술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도 보호될 수 있음. 본문에서는 고체 향수 제품 포장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저작권 분쟁 사례를 통하여 자연 요소가 포함된 포장 도안이 미술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한계점과 상표 및 일부 문자 표시의 차이가 포장 도안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粤0114民初3449号
	2심	(2026)粤73民终322号
관할 법원	1심	광둥성 광저우시 화두구 인민법원(广东省广州市花都区人民法院)
	2심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C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D 씨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도안이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 회사, C 회사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B 회사, C 회사 및 D 씨의 법적 책임		
	2심	1.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도안이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도안과 B 회사, C 회사가 사용한 도안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3. 원심이 정한 손해배상액이 타당한지 여부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도안은 저작권법상 미술작품에 해당함. 2. B 회사, C 회사는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3. B 회사, C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A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합계 50,000위안을 배상하여야 함. D 씨는 C 회사의 위 배상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権法) 제3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12호, 제53조 제(1)항, 제54조 · 회사법(公司法) 제23조 제3항			
최종 판결일	2026년 5월 27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자사가 판매하는 X 고체 향수 제품에 두 종류의 포장 이미지(이하 "사건 포장 도안"이라 함)를 사용함. 한편 B 회사와 C 회사는 Y 고체 향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사건 포장 도안과 유사한 도안(이하 "분쟁 포장 도안"이라 함)을 외부 포장에 사용하였음. 이에 A 회사는 B 회사와 C 회사가 Y 고체 향수 제품에 분쟁 포장 도안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회사와 C 회사 및 C 회사의 법정 대표 D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B 회사와 C 회사가 사용한 분쟁 포장 도안이 사건 포장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A 회사의 주장에 대해 B 회사와 C 회사는 사건 포장 도안은 일출과 수면 등 통상적인 자연 소재와 일반

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분쟁 포장 도안은 사건 포장 도안과 전체적인 시각효과가 상이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함. 한편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면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본 안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사건 포장 도안이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분쟁 포장 도안이 사건 포장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
- ③ B 회사, C 회사 및 D 씨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사건 포장 도안의 미술저작물 해당 여부

미술저작물이란 회화, 서예, 조각 등 선과 색채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적 의미를 지닌 평면 또는 입체의 조형예술 저작물을 말함. 즉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은 일정한 심미적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표현이어야 함.

본 안건에서 두 종류의 사건 포장 도안은 선과 색채 등의 요소를 배열·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정한 디자인상의 미감이 있고 일정한 독창성과 예술성을 나타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함. B 회사와 C 회사 및 D 씨가 2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포장 도안에 독창성이 결여되어있음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건 포장 도안을 미술저작물임을 인정함.

2) 저작권 침해 여부

접근 가능성에 관해서 사건 포장 도안은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으므로, B 회사와 C 회사는 이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음.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서는 사건 포장 도안과 분쟁 포장 도안을 비교한 결과, 분쟁 포장 도안에 상품명이나 상표에 해당하는 표시가 A 회사의 사건 포장 도안에 있는 문구 및 포장 상자 측면의 문구와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형태와 비율 및 색채와 요소 배치가 사건 포장 도안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함이 인정됨.

따라서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의 허가 없이 자신들이 생산·판매한 Y 고체 향수 제품에 사건 포장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포장 도안, 즉 분쟁 포장 도안을 사용함으로써 A 회사가 사건 포장 도안에 대해 보유한 복제권과 발행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3) 법적 책임

본 안건에서 A 회사가 저작권 침해로 입은 실제 손실과 B 회사 및 C 회사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모두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법원 재량으로 정함. 구체적으로 B 회사와 C 회사의 침해행위의 성질과 지속기간 및 주관적 악의의 정도와 침해범위, 그리고 A 회사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총 50,000위안을 배상금으로 확정함. 또한 회사법에 의해 C 회사의 법정 대표 D

씨는 C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함. 2심 법원은 이와 같이 정한 손해배상액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배상금을 유지함.

3. 판례분석

1) 자연 요소를 사용한 미술저작물의 독창성

① 자연 요소를 사용한 저작물의 독창성

본문 판례에서 문제 된 일출과 수면 및 해양은 자연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소재로서 특정한 그 자체를 독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님. 저작권법은 자연현상이나 사상 및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창작자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를 보호하므로 자연 요소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포장 도안의 독창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창작자가 어떠한 선과 색채 및 도형과 문자요소를 선택하고 이들을 어떠한 비율과 위치 관계에 따라 배열·조합하였는지에 있음. 동일한 일출이나 해양을 소재로 사용하더라도 원의 크기와 배치 및 수평선의 위치, 색채 대비와 여백의 구성 등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시각적 표현이 형성될 수 있음.

본문 판례에서도 B 회사와 C 회사는 사건 포장 도안이 자연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출과 수면의 이미지를 단순히 색상만 변경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개별적인 자연 요소 자체보다 선과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 도안에서 구체적으로 배열·조합된 방식에 주목하여 일정한 디자인 미감과 독창성 및 예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자연 요소를 이용한 저작물의 독창성은 소재의 희소성이나 새로움이 아니라 그 소재를 구체적인 시각적 표현으로 구성한 창작적 선택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줌.

다만 판결문은 어떠한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 창작자의 개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지와 통상적인 표현과 보호 가능한 결합표현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음. 따라서 이 판결을 일출과 해양이라는 소재 자체에 대한 넓은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그 보호 범위를 자연 요소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색채와 비례 및 위치 관계와 요소 간 결합을 통하여 형성된 시각적 표현에 한정하여 파악해야 함.

② 포장 상자의 실용적 기능

사건 포장 도안은 실용품인 포장 상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실용 예술 저작물 법리와 관련될 수 있음. B 회사와 C 회사는 사건 포장 도안의 자연 요소 사용 외에도 해당 도안의 전체 배치 역시 고체 향수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이는 기술적 효과를 얻거나 상품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치에 해당하므로 사건 포장 도안이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는 사건 포장 도안이 상품 포장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그에 사용된 이미지 역시 기능적·기술적 역할을 하는 것을 강조한 의견임.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건 포장 도안이 실용 예술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건 포장 도안에 사용된 요소의 배열과 조합에 독창성이 존재한다고만 언급하였음. 그 이유는 A 회사가 X 고체 향수 제품 포장 상자의 입체적 형상이 아니라 그 포장 상자에 인쇄된 평면 이미지, 즉 사건

포장 도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였기 때문임.

이 기준에서 보면 사건 포장 도안은 포장 상자 전체를 실용 예술 저작물로 보호한 사건이라기 보다 상자 표면에 구현된 평면 미술도안의 보호를 인정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함. 따라서 법원 역시 사건 포장 도안을 선과 색채 등의 요소를 배열·조합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일정한 디자인 미감과 독창성 및 예술성을 가진 미술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포장 상자의 수납구조나 개폐 방식 및 입체적 형상이 예술적 표현과 분리되는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음. 이는 권리의 중심이 X 고체 향수 제품 포장 상자의 기능적 구조가 아니라 표면에 인쇄된 시각적 표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문 판례를 실용 예술 저작물 법리의 직접적인 적용 사례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상품 포장 상자는 실용품이므로 입체적 형상까지 권리 대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능과 예술의 분리 가능성을 심사해야 함. 반면 포장 상자의 표면 도안만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자의 기능과 분리된 평면표현이므로 독창성과 심미성 충족 여부가 중심이 됨. 결국 권리자는 등록과 소송 단계에서 보호 대상이 상자의 구조인지 입체적 외관인지 표면 그래픽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함.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기능적 요소에 대한 과도한 독점을 허용하거나 반대로 보호 가능한 평면표현까지 실용품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미술 저작물 유사성 판단에서 상표 및 문자 표시의 영향

본문 판례의 두 번째 의미는 포장에 표시된 상표와 일부 문자 표시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만으로 미술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있음.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분쟁 포장 도안에 표시된 문구가 사건 포장 도안의 문자와 다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함. 그러나 양측 포장의 전체적인 형태와 비율 및 색채와 구성요소의 배치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함. 이는 상표나 상품명이 변경되었더라도 포장 도안이 보호되는 시각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재현되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2022)노민종2514호¹⁾가 있음. 해당 사례는 식품 제품 포장 도안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서 피고 제품 포장 도안은 포장 상단의 브랜드 표시와 일부 작은 문구 및 상품 정보를 달리하였으나, 전체적인 배치와 색채 조합 등 외부 포장 장식은 원고의 포장 도안과 기본적으로 일치하였음.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미술저작물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도안을 상품 포장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음. 항소심은 원고의 저작권이 피고의 권리보다 먼저 성립하였음을 확인하고 원심의 침해 판단을 유지함.

본문 판례와 2514호 사례는 모두 다른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이므로, 서로 다른 상표가 표시되면 소비자가 두 상품의 생산·판매 주체를 구별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음. 그러나 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은 소비자가 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는지를 직접 판단하

1) (2022)鲁民终2514号

는 문제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재현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임.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원고 포장 도안의 형태와 색채 및 비율과 요소 배치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있다면 상표의 차이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기 어려움.

다만 2514호 사례는 상표와 나머지 표현 요소가 전체 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세밀하게 비교하거나 보호되는 요소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요소를 단계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음. 또한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권리가 선행한다면 침해가 성립한다는 점이 사실상 다투어지지 않았으므로 상표의 차이가 실질적 유사성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적인 쟁점으로 상세히 심리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례를 상표의 차이가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한 사례로 이해하기보다는 상표와 일부 문구가 달랐음에도 전체 포장 장식이 기본적으로 일치한 구체적 사안에서 침해가 인정된 사례로 인용하는 것이 정확함.

그러나 상표와 문자 표시를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음. 짧은 상품명이나 일반적인 설명 문구 자체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나 글자의 크기와 서체 및 색채와 배열 방식이 주변 도형과 결합하여 창작적인 시각 구성을 형성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상표와 문자 표시의 차이가 포장 전체의 시각적 표현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를 살펴야 함. 기존 도안의 색채와 비율 및 주요 요소의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상표나 짧은 문구만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기는 어려움.

또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의 개수를 기계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됨. 상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문구와 통상적인 포장 형태 및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배치 등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한 요소 자체에는 독점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되 그러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선택·배열·조합된 방식에 창작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함. 그다음 양측 도안에서 공통되는 보호 가능한 결합표현이 전체적인 시각적 구성에서 차지하는 질적 비중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본문 판례는 이러한 요소별 여과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고 전체 형태와 비율 및 색채와 요소 배치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기준은 판결의 명시적 판시라기보다 그 판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기준으로 이해해야 함.

결국 본문 판례와 2514호 사례는 포장에 사용된 상표나 상품명을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 위험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독립적인 포장 도안임을 주장하려면 상표의 차이뿐 아니라 보호 가능한 색채와 형태 및 비율과 문자, 도형의 선택·배열·조합에서 독자적인 독창성이 드러나야 함. 권리자 역시 상표가 다르다는 사실을 단순히 배제하기보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측 포장에 공통되는 보호 가능한 표현이 무엇이며 그 공통부분이 전체적인 시각적 구성에서 어떠한 질적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본문 판례는 일출과 해양 같은 자연 요소나 통상적인 도형 자체는 독점할 수 없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선택·배열·조합한 표현에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줌.

또한 포장에 다른 상표와 문자 표시가 사용되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와 비율 및 색채와 요소 배치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제시함. 따라서 권리자는 포장 도안의 개발 과정과 수정 이력을 보존하고 상표뿐 아니라 색채와 형태 및 요소 배치 전반에서 독자적인 창작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6)粵73民终322号
(2022)鲁民终2514号